

#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

## 1. 표지 도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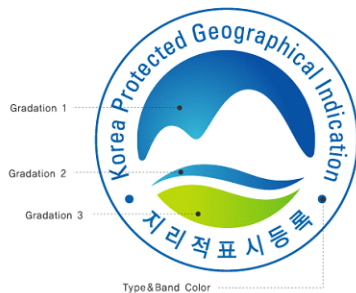
## 2. 도표제작 방법

가. 도형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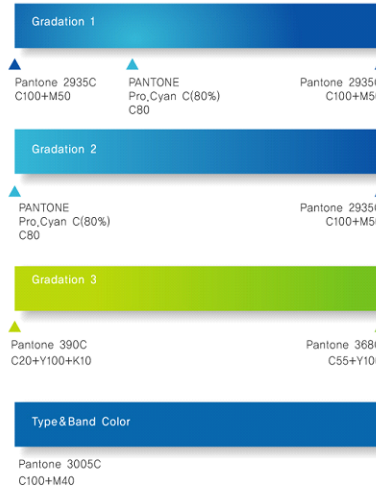
나. 한글표기는 윤고딕 140 서체를 사용하며,  
영문표기는 Universe 57 Condensed 서체를 사용한다.


다. 표시도형의 색상 배색비율은 다음과 같다.

- 1) 하늘과 물결색은 Pantone 2935c(Cyan 100% + Magenta 50%)와 Pantone Pro Cyan C색의 80%에 해당하는 Cyan 80%사이의 색상을 사용한다.
- 2) 녹색들판의 색은 Pantone 368c(Cyan 55% + Yellow 100%)과 Pantone 390c(Cyan 20% + Yellow 100% + Black 10%)로 한다.
- 3) 테두리 및 타입의 색깔은 Pantone 3005c (Cyan 100% + Magenta 40%)로 한다.



### 3. 표시사항



	<p>등록명칭: (영문등록명칭)</p> <p>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, 지리적표시등록 제○○○○호</p> <p>생산자:</p> <p>주소(전화):</p>
<p>이 상품은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.</p>	

### 4. 표시방법


- 가. 크기: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.
- 나. 위치: 포장재 옆면에 표시하되, 포장재 구조상 옆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
- 다.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.
- 라. 포장하지 않고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지리적표시등록품의 표지를 인쇄 또는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표지 도표와 등록명칭만 표시할 수 있다.
- 마. 글자의 크기(포장재 15kg들이 기준)
  - 등록명칭(한글, 영문): 가로 2.0cm(57point)×세로 2.5cm(71point)
  - 등록번호, 생산자, 주소(전화):

가로 1.0cm(28point)×세로 1.5cm(43point)

○ 그 밖의 문자: 가로 0.8cm(23point)×세로 1.0cm(28point)

□ 표시 예 : 홍삼

1. 일반(보통) 포장의 경우

	등록명칭 : 고려홍삼 영문등록명칭 : Korean Red Ginseng 등록자 : (사)고려인삼연합회 , 지리적표시등록제19호 생산자 : 주 소 :
이 상품은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에 따라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.	

2. 소포장의 경우



- 홍삼 제19호
- 백삼 제20호
- 태극삼 제21호
- 인삼제품 제47호
- 홍삼제품 제48호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06 - 19호 (9.22)

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

- 등록대상품목 : 홍삼
- 등록명칭
  - 한글 : 고려삼, 고려홍삼
  - 한자명 : 高麗蔘, 高麗紅蔘
  - 영문 : Korean Sam, Korean Red Ginseng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06 - 20호 (9.22)

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

- 등록대상품목 : 백삼
- 등록명칭
  - 한글 : 고려인삼, 고려백삼
  - 한자명 : 高麗人蔘, 高麗白蔘
  - 영문 : Korean Ginseng, Korean White Ginseng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06 - 21호 (9.22)

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

- 등록대상품목 : 태극삼
- 등록명칭
  - 한글 : 고려태극삼
  - 한자명 : 高麗太極蔘
  - 영문 : Korean Taekuk Sam / Korean Taekuk Ginseng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08 - 47호 (6.16)

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

- 등록대상품목 : 인삼제품
- 등록명칭
  - 한글 : 고려인삼제품
  - 영문 : Korean Ginseng Products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08 - 48호 (6.16)

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

- 등록대상품목 : 홍삼제품
- 등록명칭
  - 한글 : 고려홍삼제품
  - 영문 : Korean Red Ginseng Products

# 고려인삼의 지리적표시

## □ 법적근거

### ○ 인삼산업법 제22조 (고려인삼 등의 표시)

인삼류와 그 용기·포장등에 고려인삼·고려수삼·고려홍삼·고려태극삼·고려백삼등 "고려"자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## □ 등록근거

### ○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(지리적표시의 등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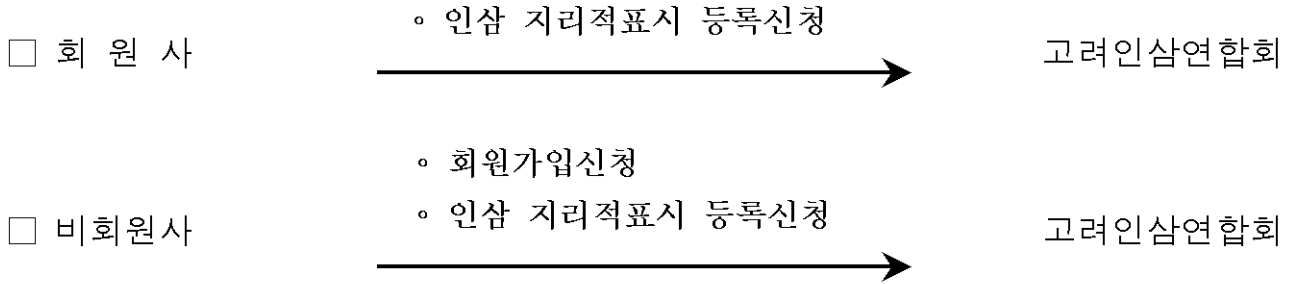
- ① 농림부장관은 지리적특성을 가진 우수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서의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.
- ② ...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(농산물품질관리원장:시행규칙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... 다만, 지리적특산품중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·포장 등에 ..... "고려"자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.

## □ 등록의 신청근거

### ○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(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자격)

- ① 법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은 특정지역 안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(법인)에 한하여 할 수 있다.

## 신청절차



※ 지리적 표시등록만을 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회비는 면제하되 정관에 의한 권리의무는 가짐

## 지리적표시 등록 사후관리

- 지리적 특산품의 등록요건에 의한 적합성 여부
-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기준 적합성 여부
- 지리적 특산품의 시료수거·조사 또는 전문시험 연구소 시험의뢰

## 지리적표시 관리 회비

품 목	300g 당	600g 당	비 고
홍삼 백삼 태극삼	10원	20원	중량비례

## □ 신청자격

- 고려인삼을 제조·판매하는 업체
- 인삼류(홍삼, 백삼, 태극삼 등)에 "고려" 용어를 사용하여 표기하고자 하는 자

## □ 제출서류

- 인삼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 1부
- 생산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 1부
- 회원가입신청서 1부 (협회 미가입 업체시)

## □ 지리적표시의 목적

-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·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 향상,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도모
-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
-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

## □ 도입배경 및 개념

-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('95년 WTO의 『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: TRIPs』)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,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등록제도 도입(농수산물품질관리법 ; '99. 7. 1)
- 지리적표시라함은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·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

## □ 기대효과

- 농산물에 대해 지리적표시를 실시함으로써
  - ① 시장차별화를 통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
  - ② 생산자단체가 품질향상에 노력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촉진
  - ③ 생산자체간의 상호협조체제가 원만히 구축될 경우 생산품목의 전문화와 농산물 수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



- ④ 소비자입장에서는 지리적표시제에 의해 보호됨으로써 믿을 수 있는 상품 구입(소비자 보호)
- ⑤ WTO에서 마련한 “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(TRIP'S)"에 의한 국제적인 보호 가능
- ⑥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존 등